G-Welfare Brief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vol.04
2019.07.18.

발행인 : 진석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s://ggwf.gg.go.kr

ISSN 2671-7174

장애인 여행, 실태와 과제

요약

□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는 지역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사회적응기술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화 여가활동 참여율 및 만족도 등은 저조한 수준**

○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신체적, 정서적 웰빙과 삶의 질 개선 등과 정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율은 낮고, 만족도는 중간 수준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96.6%는 여가시간을 TV 시청하며 보내고 있고, 실질적인 문화 및 여가생활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여행 참여율 6.8%, 해외여행 참여율 5.5%)
- 장애인의 여행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1회 이상 낮고, 장애인 관광환경 실태는 보통 이하의 수준이 대부분이고 안내시설 등의 환경이 열악(양호 관광지 1.8%)
- 반면 당일여행의 평균 지출액이 일반국민의 2배에 달하지만, 관광만족도는 일반국민의 60% 수준에 불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증진의 법률은 시행되고 있으나, 관광활동 지원 관련 시행령은 마련되지 못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광사업자의 범위 규정은 실효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은 이동권만 규정, 「관광진흥법」은 장애인 관광지원을 조문화하는 수준

○ 관광복지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 7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잇는 관광'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하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의 강화를 추진

□ **장애인 여행지원제도는 중앙정부의 경우 낮은 지원금액 등으로 이용자가 저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이나 만족도와 이용의향은 높은 수준**

○ (중앙정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무장애 여행,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등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저조한 실정

○ (경기도) 열린관광지 개발을 위한 '무장애여행 가이드북-여행누림', 관광욕구 해소를 위한 '누림버스, 누림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응이 높음

□ **사회관광으로서의 장애인 여행을 통해 '권리'로서의 장애인 여행권을 확립**

○ 경기도 장애인 여행권은 법률에서 보장받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의 하위 권리(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의 종합적 관점에서 보장받아야 함

○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개정, 가칭) 취약계층 여행바우처 '경기여행누림카드' 도입하여 차액분 지역화폐로 지원, '누림버스, 누림카' 효율적 운영 및 '여행누림' 홍보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긴요

I. 권리로서의 장애인 여행

□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심리적 행복감 및 만족감을 주며, 장애인 여행도 지역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사회적응기술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은 개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및 피로감 해소에 기여하며, 만족감·행복감·자기 발전 증진에 기여(King et al., 2014[1])

- 현대사회에서 여행 등 여가활동은 삶에 있어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며, 생활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김영규. 2013[2])
- 이 같은 인식에 힘입어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2010년 대비 2017년 30.9%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 자료를 통해 파악

〈그림 1〉 2010년 대비 국내여행 참가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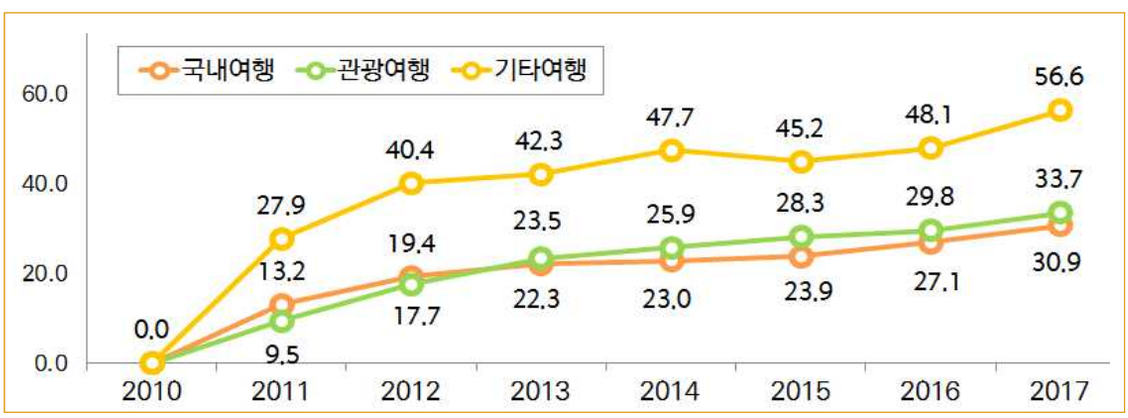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9). 국내여행 참가자 수[3]

○ 장애인의 경우도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웰빙과 삶의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4]를 통해 확인

- 여가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여가활동의 종류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은 신체적·사회적·심리적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
- 특히, 중증 장애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는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감, 자립, 유능감,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 King, G., Batorowicz, B., Rigby, P., Pinto, M., Thompson, L., & Goh, F. (2014). The leisure activity settings and experiences of youth with severe disabilities. Developmental Neurorehabilitation, 17(4), 259–269.
2) 김영규(2013). 장애인의 관광 활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7(6), pp.431–445.
3) 통계청(2019). 국내여행 참가자 수
4) 박영준 · 심경순(2013).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지지, 여가만족 그리고 사회기술능력과의 인과관계연구", 『재활복지』 17(1), pp.137–162; 정경희 · 안성우 · 신창숙(2014). "장애인의 여가생활양식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지체 · 중복 · 건강장애연구』 57(4), pp.205–228; 남현주 · 이현지(2017).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삶의 질과의 관계", 『재활복지』 21(1), pp.121–140.

○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광 및 여가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경향

- 장애인의 여가 및 여행활동 배제는 일상생활에서의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활동이어야 하지만, 관광분야에서는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봉구·우종한. 2014[5])

□ 사회관광(Social tourism)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여행(관광)

○ 법률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여행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법적 인정을 받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의 하위 개념의 종합적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함

-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동시에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 · 사회국가원리: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소극적 존중과 보호를 넘어 정의로운 사회 형성을 위하여 모든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 원리
- 장애인 접근권은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 접근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앞선 장애인관련 법령을 통해 권리성을 인정받고 있음[6]
  - · 이동권: 보행, 교통을 포함한 이동에 있어 수단 및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 시설이용권: 교육, 노동,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편의를 보장받을 권리
  - · 정보접근권: 의사표현 및 정보이용, 문화 예살 등의 정보와 통신의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 장애인 여행은 여행지로의 '이동권', 여행지의 '시설이용권', 여행지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권리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임

○ 사회적 관점에서 Richards(1999)[7]와 McCabe(2009)[8]는 장애인 관광에 대하여 소득, 교육 정도 등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s)로 규정

- 현대사회에서 여행은 생활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모든 사람의 권리임과 동시에 공정성 관점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된 활동(한국장애인개발원. 2018[9])
- 이는 취약계층,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임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복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류성옥 외. 2011)
- UN에서는 2006년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관광 및 여가의 권리를 선언하여 관광접근성

5) 이봉구 · 우종한(2014). "장애인의 여행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산업연구』 8(1), pp.1-17.
6) 허창덕 · 신주영(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두오균(2010).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인권연구』 1(1).
7) Ricahards, G.(1999). Vacations and the Quality of Life: Patterns and Structur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3), pp. 189-198.
8) McCabe,S.(2009). Who needs a holiday? Evaluating soci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6(4), pp.667-688.
9)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제안

- 이에 Richards(1999)와 McCabe(2009)는 장애인 관광을 사회관광(social tourism)의 일환으로서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보장을 강조
- 류성옥 외(2011)[10]는 장애인 관광을 복지
- 관광을 포함한 장애를 가진 관광주체의 관광욕구 실현과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관광활동으로 폭넓은 의미에서 접근을 강조

○ **이에 세계 선진국들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및 여행활성화를 위해 '무장애(barrier free)'제도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중심으로 공공인프라 정비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여행이 활성화
- 2002년 대중교통기관의 베리어프리를 법률로서 시행하였고, 보행공간 등의 배리어프리화, 장애인 이동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05년부터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강'을 정리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마을 만들기와 마음의 베리어프리 등 중점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의 유니버설 투어리즘 정책은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체제 강화, 민간영역에서는 상품개발 및 서비스 시행 등 다각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17년 장애인 관광차별 금지 조항의 법률 도입과 문재인 정부 7대 국정과제 중 관광복지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잇는 관광'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의 강화를 추진
-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행 취약계층을 위한 열린 관광지의 추가 조성, 나눔관광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안내체계 개선 등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추진
- 이는 장애인 관광이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권리로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나아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여행 등 여가활동이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지 실태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0) 류성옥 · 이영진 · 박승현(2011). "복지관광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의 관광제약요인과 촉진요인 분석", 『지체 · 중복 · 건강장애연구』 54(3), pp.177-203.

Ⅱ. 장애인의 여가 및 여행활동 실태

□ 장애인의 여행참여율 및 문화·여가활동은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능력 등의 이유로 만족도는 저조한 수준

○ 보건사회연구원(2017)[11]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의 참여율은 낮고, 만족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96.6%는 여가시간에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자택에서 보내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화 및 여가생활은 매우 부족
- 장애인의 지난 1주일간의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에 대한 참여율은 6.8%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여행 참여율은 5.5%로 나타남

〈표-1〉 장애인 여행 참여율 (지난 1주일)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여행	7.5	3.0	8.7	7.3	15.0	3.8	22.6	3.2	3.2	6.4	2.4	14.5	12.0	15.8	6.3	6.8
해외여행	7.0	2.7	7.1	3.3	3.4	3.7	3.8	0.9	2.8	12.7	2.1	14.5	0.0	10.1	7.2	5.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활동 만족 정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4.0%), 약간만족(45.3%), 약간불만족(38.5%), 매우 불만족(12.2%)으로 나타나 불만족의 비율이 다소 높은 상황
  - 장애유형별로 여행참여율과 만족도 간 관계를 보면, 국내여행 참여율이 높은 유형은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 언어쟁애, 간장애 순이며,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심장장애, 자폐성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순으로 나타나 참여율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

〈표-2〉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매우만족	3.3	3.0	5.9	5.0	9.3	4.5	6.3	4.3	2.9	0.0	2.0	8.0	5.8	2.4	7.7	4.0
약간만족	48.8	25.1	46.6	49.0	46.2	48.1	53.3	40.8	44.0	62.3	26.9	50.8	41.2	51.8	29.9	45.3
약간불만족	37.7	45.6	37.0	39.5	37.6	34.2	21.5	43.3	39.4	22.6	36.0	33.4	34.0	34.1	52.7	38.5
매우불만족	10.1	26.2	10.5	6.4	6.9	13.3	18.9	11.6	13.6	15.1	35.0	7.9	19.0	11.7	9.7	12.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있어 불만족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이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4%가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여, 28.0%는 경제적 부담 때문
-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여(10.6%),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9.9%),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 불편(8.5%) 등의 이유로 문화여가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와 함께 시간과 문화여가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등 장애인 친화적 문화 개선 필요
- 더불어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이동의 편리성과 함께 문화시설 등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과 확대가 필요

〈표-3〉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경제적 부담	33.6	15.5	31.3	24.4	37.0	22.8	5.6	21.5	31.9	0.0	35.3	21.0	48.5	33.2	33.7	28.0
시간의 부족	15.6	2.1	14.6	8.8	3.5	5.2	0.0	5.4	2.2	0.0	0.0	7.8	3.4	2.4	9.3	10.6
이동의 불편	10.2	15.2	7.4	2.9	2.2	1.1	0.0	2.5	4.7	0.0	2.8	3.0	0.0	8.7	0.0	8.5
도우미 부재	1.3	3.0	4.3	0.4	8.5	13.5	8.8	7.6	2.7	0.0	0.0	0.0	0.0	0.0	0.0	3.1
여가시설 부족	1.3	0.9	3.7	1.7	0.0	1.1	13.1	1.7	1.0	0	0.0	0.0	0.0	0.6	1.3	1.5
편의시설 부족	0.8	1.1	1.6	0.4	0.0	1.4	0.0	0.0	0.0	0.0	0.0	0.0	11.7	0.0	0.0	0.9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4	2.1	3.1	2.3	1.3	11.7	22.1	5.5	0.3	0.0	0.0	0.0	21.4	10.3	3.7	2.8
취미의 부재	9.3	4.2	13.2	11.0	12.5	16.1	4.1	25.1	2.2	18.2	0.0	5.5	0.0	3.9	12.1	9.9
체력 부족	25.7	51.9	19.0	29.5	23.6	6.7	0.0	22.6	54.1	81.8	62.0	62.7	3.1	34.2	40.0	29.4
의사소통 어려움	0.5	3.7	1.5	18.5	11.4	20.5	46.3	8.2	1.5	0.0	0.0	0.0	3.0	0.0	0.0	5.1
기타	0.2	0.2	0.4	0.0	0.0	0.0	0.0	0.0	0.5	0.0	0.0	0.0	8.8	6.6	0.0	0.2

주 : 무응답 제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의 여행 실태를 일반국민과 비교하면, 여행 횟수도 적고 관광만족도는 낮은 반면 비용 부담은 2배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관광공사(2014)[12]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행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1회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광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관광 형태는 개별여행(가족여행 등)이 57.4%, 패키지여행(장애인단체/기관 등)이 42.6%로 개별여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평균 숙박일수는 2~3일(1~2박)이 85.3%로 가장 많았으며, 당일 여행은 4.8%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총 여행횟수는 대부분이 1~4회 이하(57.1%)로 10회 이상은 전체 응답자의 19.6%에 불과

〈표-4〉 장애인 관광형태 및 여행일수 · 횟수

구분		빈도(회)	비율(%)
주 관광형태 (n=293)	개별여행(개인, 가족, 친구 등)	171	57.4
	단체여행(각종 단체 및 기관 등)	122	42.6
평균 여행일수 (n=272)	무박	13	4.8
	1박	125	46.0
	2박	107	39.3
	3박	18	6.6
	4박	4	1.5
	5박	2	0.7
	6박 이상	3	1.1
총 여행횟수 (n=280)	없음	9	3.2
	1~4회	160	57.1
	5~9회	56	20.0
	10~14회	32	11.4
	15~19회	7	2.5
	20회 이상	16	5.7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여행 횟수는 1인당 평균 당일 여행 3.18회, 숙박 6.15회로 장애인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5〉 여행일수 및 횟수 비교

구분		장애인(2013년 기준)[1]	일반국민(2014년 기준)[2]
여행일수	당일	1.77	3.18
	숙박	3.38	6.16
	전체	5.15	9.34
여행횟수	숙박여행	1.30	5.47
	당일여행	1.77	3.18
	전체	3.07	2.29

1)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12)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반면 여행비용에 관해서는 당일여행의 평균 지출액은 일반국민의 2배에 달하지만, 관광만족도는 일반국민의 60% 수준에 불과

– 장애인의 여행 지출액은 1회 평균 당일 141,372원, 숙박여행 238,866원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당일여행 평균 지출액은 72,464원으로 장애인이 50%이상 많은 여행비용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정

〈표-6〉 여행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비교

장애인(2013)		일반국민(2012)		
당일여행 평균 지출액	141,732원	여행경험자 1회 평균	당일여행	72,464원
숙박여행 평균 지출액	238,886원		숙박여행	232,818원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13]

– 관광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관광관련 서비스 및 시설 등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2.23점), 여행사와 서비스(2.23점) 항목에서 점수가 낮음

· 이는 국민여행실태조사 대부분 항목의 만족도가 3.8점 이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임

〈표-7〉 관광만족도 비교

장애인(2013)		일반국민(2012)	
주요항목	평균점수	주요항목	평균점수
교통수단과 서비스	2.42	교통	3.87
숙박시설과 서비스	2.49	숙박시설	3.99
식당시설과 서비스	2.60	식당 및 음식	3.80
관광프로그램과 서비스	2.51	체험 프로그램	3.87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2.23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3.87
여행사와 서비스	2.23	관광 편의시설	3.85
관광지 종사자 서비스	2.38	지역 관광종사자의 친절성	3.87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 장애인 관광환경 실태는 안내시설 등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관광공사(2015)[14]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500개 관광지 중 관광취약계층(장애인, 시니어, 영유아동반가족)이 접근하기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광지는 9개(1.8%)에 불과한 실정

13)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국민여행 실태조사.
14)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I 』

- 조사 항목 중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된 항목은 '출입구'(58%)이며, '장애인 화장실'의 양호 수준은 2%에 불과한 실정
- 전반적으로 가장 미흡한 항목은 '안내시설'(87.4%)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은 관광지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

〈표-8〉 관광지 유형별 시설분류 분석결과(종합)

시설 분류	유형분류	사례 수	양호		보통		미흡					
							소계		미흡		미설치	
			개	%	개	%	개	%	개	%	개	%
출입구	역사문화자원	107	48	44.9	59	55.1	–	–	–	–	–	–
	자연자원	138	77	47.8	71	51.4	1	0.7	1	0.7	–	–
	시설자원	255	176	69.0	77	30.2	2	0.8	2	0.8	–	–
주차장	역사문화자원	107	17	15.9	58	54.2	33	30.8	28	26.2	5	4.7
	자연자원	138	21	15.2	64	46.4	53	38.4	42	30.4	11	8.0
	시설자원	255	50	19.6	156	61.2	49	19.2	40	15.7	9	3.5
화장실	역사문화자원	107	4	3.7	89	83.2	14	13.3	1	0.9	13	12.1
	자연자원	138	6	4.3	113	81.9	19	13.8	1	0.7	18	13.0
	시설자원	255	29	11.4	203	79.6	23	9.0	–	–	23	9.0
안내 시설	역사문화자원	107	3	2.8	9	8.4	95	88.8	85	79.4	10	9.3
	자연자원	138	6	4.3	10	7.2	122	88.4	94	68.1	29	20.3
	시설자원	255	7	2.7	34	13.3	214	83.9	190	74.5	24	9.4
편의 시설	역사문화자원	107	44	41.1	37	34.6	26	24.3	26	24.3	–	–
	자연자원	138	51	37.0	36	26.1	51	37.0	51	37.0	–	–
	시설자원	255	67	26.3	121	47.5	67	26.3	67	26.3	–	–
보행 시설	역사문화자원	107	21	19.6	53	49.5	33	30.8	33	30.8	–	–
	자연자원	138	30	21.7	54	39.1	54	39.1	54	39.1	–	–
	시설자원	255	71	27.8	153	60.0	31	12.1	31	12.1	–	–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I』

III. 장애인 여행 관련 제도

1. 장애인 여행 관련 법령

□ 장애인 관련 법률은 시행되고 있으나, 관광활동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은 마련되지 못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동법 시행령에서 편의제공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의 문제가 높음

-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적극적 관광활동 참여의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편의제공의 의무를 가지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하도록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며(2018년 일부개정), 유예기간을 거쳐 전 관광사업자에게는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에서 이동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은 장애인 관광지원을 조문화하는 수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체적 대상 시설 및 기준을 명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
- 그러나 실제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

2. 장애인 여행 지원제도

□ (중앙정부) 바우처,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저조한 실정

○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스포츠, 여행, 통합문화 등 세분화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
- 2019년 기준 1인당 연 8만원 내 신청자에게 발급하며, 여행분야의 경우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등에서 사용 가능
- 그러나 2012년까지 진행된 여행이용권 사업에 비해 지원액이 대폭 축소되었으며(15만원 → 8만원), 사용처에 대한 정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림 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야별 이용 비율(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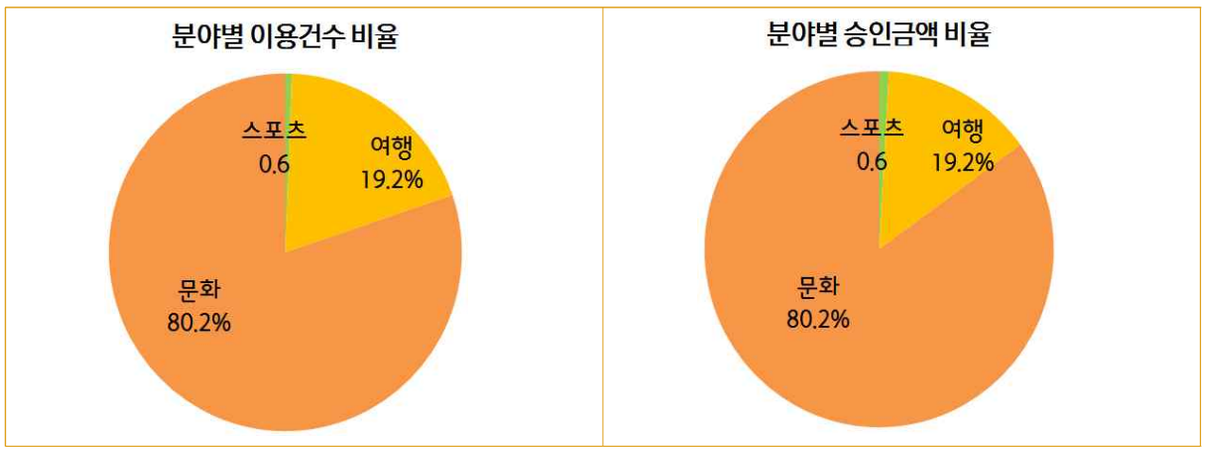

자료 : (좌) · (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시스템 2017[15]

○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여행,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욕구 충족 및 기회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는 미흡한 수준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 내에 무장애 여행 섹션을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시행
-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여행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시설 내 이동경로, 편의 시설 등 실제 정보와 달라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혼선을 주어 관광지 개선효과는 미흡

□ (경기도)경기도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지원'

○ 경기도는 장애인의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과 함께 열린관광지[16] 개발을 위한 '무장애 여행 가이드북-여행누림'을 발간하여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는 장애인의 관광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 6월에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무장애 여행 관광지를 소개하는 가이드북 발간
- 여행지 선정은 각 시군의 랜드 마크와 같은 여행지로, 비장애인, 장애인이 모두 보편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기 여행지를 선정
  -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고 주출입구 및 보행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관람, 이동이 가능한 여행지를 선정

15) 문화체육관광부(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야별 이용 비율, 문화누리카드시스템
16) 열린관광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자체가 함께 누구나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로,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배려한 BF(Barrier Free)시설을 확충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의미

- 가이드북은 40개의 여행지 정보를 '자연과 함께 쉬어가기', '역사 유적탐방', '문화 누리기' 3영역으로 구분 제시
  - 여행지 소개, 입장료(장애인 할인), 이용시간, 교통편 등의 여행지 정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지역 관광안내소, 문화해설 등의 지역자원과 보행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담고 있음
  - 그 외 지역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놀거리, 인근 가볼만한 여행지,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및 입식테이블을 확보하고 있는 음식점 정보를 제공함

○ **경기도는 장애인의 관광욕구를 해소하고자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 승합차와 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누림버스, 누림카'사업을 6월 10일부터 누림센터를 통해 수행**

- 이용지역은 경기도내 여행지로 '누림버스'(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2대는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게, '누림카'(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4대는 경기도내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게 대여하고 있음
- 휠체어 8석을 갖춘 '누림버스'의 경우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등 운행비용을 지원하고 휠체어 1석을 갖춘 '누림카'는 이용자에게 탁송서비스를 제공하나 기타 일체의 비용은 이용자 부담
- 시행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이용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30점 만점에 29.3점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수요에 비해 차량이 적은 상황

〈표-9〉 6월 운영 실적

운영횟수	신청기관수	총 이용인원	휠체어 이용인원	여행지역
누림버스 16회	12기관 (남부 10, 북부 2)	254명	29명(11.4%)	8개 시군 (남부 6, 북부 2)

□ [참고] 장애인 여행 관련사업

경기여행 '누림버스, 누림카'

- 이용지역 : 경기도내 여행지
- 이용대상
  - 누림버스 :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누림카 : 경기도내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1순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동반하는 시설 · 단체), 2순위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및 동반하는 시설 · 단체), 3순위 (1,2순위를 제외한 선착순)
- 이용시간 및 이용기간
  - 누림버스 : 1회 최대 2박 3일, 연간 10일, 08:00~20:00
  - 누림카 : 1회 최대 3박 4일, 연간 10일, 09:00~18:00 / 탁송 10:00~16:00(평일) ※ 주중.주말 상설운영
- 제공사항
  - 누림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최소 이용인원 15명) :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등 운행비용 제공
    ※ 부담사항 : 주차비, 운전자 식비 및 숙박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가입 등 여행비용은 이용자가 부담(전동스쿠터는 탑승불가)
  - 누림카(휠체어 1석, 일반 5석, 최소 이용인원 1명) : 이용자에게 탁송서비스 제공
    ※ 부담사항 :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료, 여행지 입장료, 과태료, 범칙금 등 여행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 휠체어 적재용 리프트 차량(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으로 휠체어 착석상태로 탑승 불가)
- 신청방법: 홈페이지(누림센터. www.ggnurim.or.kr) 및 전자우편, 팩스, 전화(1644-2599)

장애인가족이 여행을 떠날 때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장애인 여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아자동차 사회공헌 대표사업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여행을 지원함

- 이용대상: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 대여장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성남, 강릉
- 대여차량
  - 휠체어 탑재 가능한 올뉴카니발, 레이 슬로프 차량(강릉 시내만 이용가능)
- 프로그램
  - 자유여행: 차량지원(최대 2박 3일), 유류지원, 기사지원
  - 미션여행: 차량지원+유류지원+기사지원+여행경비지원
  - 명절여행: 차량지원+유류지원+귀성선물+귀성경비지원
  - 테마여행: 호국이의 희망나들이(장애가정 입영장병 면회지원), 학대피해 장애인 치유여행, 산림치유여행
- 비용: 전액무료유류지원, 기사지원, 미션여행은 선정을 통한 지원)
- 신청방법: 전화(1670-4943) 및 홈페이지(www.greentrip.kr)

장애인기관에서 야외프로그램 진행할 때 '도시가스 민들레카'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중심으로 11인승 승합차 및 전세버스 무상대여를 지원하는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공헌 사업

- 이용대상: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 대여장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성남, 춘천, 대구
- 대여차량: 올뉴카니발 11인승 / 전세임차버스
- 프로그램
  - 민들레카 카니발: 차량지원, 유류지원, 기사지원, 경비지원, 왕복교통비 지원
  - 민들레버스: 45인승 일반전세버스 또는 휠체어특장버스
- 비용: 전액무료(유류지원, 기사지원, 미션여행, 민들레버스는 선정을 통한 지원)
- 신청방법: 전화(1670-0633) 및 홈페이지(www.mincar.kr)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편안한 여행도구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링'

수동휠체어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화키트를 부착하여 장거리 여행 및 출장에 편의를 도모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 이용대상: 수동휠체어 사용자 및 장거리 보행 불편자
- 대여장소

가정/직장 방문대여: 서울시 소재 장소에 한정
교통거점 방문대여: 김포공항 국제선 및 국내선 터미널, KTX광명역사
기타거점 방문대여: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소(가산디지털단지역)

- 대여장비: 조이스틱형 유닛, 꼬리형 유닛
- 비용: 무료
- 신청방법: 전화(1670-7988) 및 홈페이지(www.wheelshare.kr)

□ (경기도 시군) 일부 시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 경기도 내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에서 장애인 여행지원을 위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 중으로 나타남

지역	구분		대여차량	대여기간	이용대상	이용지역	이용금액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타
성남	조이누리버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버스 1대 33인승 ※ 휠체어 6석, (전동휠체어 8석, 전동스쿠터 4석) 일반석 25석	최대 2박3일	성남시 등록 장애인 장애인친목단체 ※ 장애인 학생 (비장애인 학생 통합, 장애학생 40%이상)	제한 없음	무료	운전사, 유류비, 통행료 등 주차비x	홈페이지 2개월 ~ 10일 전 신청	승차인원의 50%이상은 성남시민이어야 함 버스에 도움벨, 와이파이, TV, 휴대전화 충전기 배치
안양	해피버스	(안양시 관악 장애인 종합 복지관)	리프트 장착 39인승 ※ 휠체어 2석	당일운행 지원 (1박2일 불가)	안양시 소재(거주) 장애인	-	무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토 운행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문화체험 여행에 한해 이용가능
		(안양시 수리 장애인 종합 복지관)	리프트 미장착 45인승							
고양	꿈의버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버스 2대 33인승 ※ 개폐식, 수동휠체어 4석, 전동휠체어 3석, 일반석 17석 45인승 ※ 매립식, 수동휠체어 6석, 전동휠체어 4석, 일반석 29석	최대 1박2일	고양시 거주 장애인 ※ 관외 거주자는 고양시 거주 장애인 당사자와 동반 탑승할 경우 이용가능	제한 없음	무료	버스기사, 유류비, 통행료	2개월 전 홈페이지 신청	기사식대 자부담

○ (시사점)경기도 및 시군의 장애인 여행에 관한 지원제도는 권리로서의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 접근권(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의 개념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장애인 여행권 인정, 종합지원계획 수립, 현행제도 지원확대 등 경기도와 시군의 노력 필요

Ⅳ. 정책 제언

□ 장애인여행이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보완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 특히 하위 권리의 종합적 관점에서 '장애인 여행'이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 개정

- 순천시 및 국외 선진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 취약계층 여행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
  - · 순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 4월부터 지원계획수립, 환경조성사업 등의 범위 등을 규정한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시행
- 또한 취약계층 여행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조사, DB구축 및 관리 등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하여 무장애 여행지 개발, 취약계층 지원 제도 마련, 기존 사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제도를 마련
  - · 누림센터, 장애인 전문 여행사, 도내 여행사 등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장애인 여행관련 상품 개발 및 지원제도 마련 등을 모색
  - · 기존 시군 및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여행 사업의 확대 등의 지속을 위해 관련 조사, DB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칭) 취약계층 여행바우처 '경기여행누림카드' 도입을 통한 경제적 지원

○ 문화누리 통합카드의 발급대상자에게 매칭 형태로 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도내 여행(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여행권을 보장

- 과거 여행바우처에 비해 문화누리 통합카드는 1인당 지원액이 15만원에서 8만원 감소하였으나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1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여행비용으로 활용하기에 한계
- 실제 여행비용의 차액분 정도를 경기도 자체 취약계층 여행바우처로 도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행사 등에게는 지급 편의를 제공하여 참여 공급주체를 확대
  - · 현재 여행사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상품 개발 및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여 시스템 등 운영인프라 구축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임
  - · 이에 경기도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운영 인프라의 추가 비용을 줄이고, 수혜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누림버스, 누림카' 운영 및 '여행누림' 홍보 확대

○ 6월 중순부터 누림버스 2대, 누림카 4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이동권 확대

- 시설에서 주로 이용하는 '누림버스'는 주중에, 소규모 집단 및 가족단위가 이용가능한 '누림카'는 주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음
- 누림센터에 차량을 배치하기 보다는 시·군에 설치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여행누림 및 누림카'에 대한 홍보는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대상으로 한 광고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카카오톡,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 오프라인으로 각 장애인유형별 협회, 시·군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및 센터 등에 브로슈어 비치하고 시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방문서비스 등의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시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미니브로슈어 배포

□ 장애 유형에 따른 관광정보 및 편의시설 제공(시설이용권 및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수단을 마련하여 관광정보에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보다 질 높은 관광경험과 만족도 제고

-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오디오 안내 서비스, 점자와 픽토그램, 음성지원을 활용한 안내판, 촉지도, 유도 블록, 보조기구(라이트 돋보기, 흰 지팡이 등) 대여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광지/관광자원 안내 스크립트, 자막 및 수화 해설 서비스, 보조기구(청취 증폭기 등)의 제공
-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로 및 주요이동 경로에 대한 높이차이 제거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등 집 밖 외출(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현재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VR관광지 체험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경기도 VR 여행'[17]을 확대하여 운영

17)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와 만나는 VR' (http://vr.ggtour.or.kr/html/user/?tsort=5&msort=29)